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8. 30.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8.19.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6.8.22.
- 다. 상정일자 : 제20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16.8.3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가. 제안이유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현행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에 띄어쓰기 적용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변경
- 안 제1조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6조에 따라”로 변경
-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 및 표기를 정비

3.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은모)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이 전부개정(2007. 5. 11)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중 안 제2조 각 호의 조례 내용을 개정된 「주민등록법」에서 규정한 근거법령에 맞게 수정함은 물론 붙여쓰기한 동(同)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의견으로는 동(同) 조례안은 2016. 7. 21.~ 8. 10.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문제점도 없으며, 또한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우리 구 조례 일부 조항의 근거 법령을 수정함은 물론 법제처의 알기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조문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1.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동(同) 조례 조문의 법령근거를 개정함
제1조 중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로 함

2.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정비함

나. 제2조 및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제2항 중 =>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

라. 제4조 중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며,

마. 제5조제1항 중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로 하고,

바. 제6조제1항 중 “및 관계 서류”로 띄어쓰기를 함.

3.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가. 제2조, 제5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 나. 제3조제1항 중 “의하여 보험”을 “따라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 다.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당해”=>“해당”로 하고,
- 라.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항에 따른”으로 정비하였음.

- 동(同)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의 가입근거 법령을 개정된 「주민등록법」 근거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띄어쓰기 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고,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은 마포구 자치법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에 알기쉬운 법률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치법규 해석에 대한 이해도 향상은 물론 향후 규정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